

제 331 호

1972. 12. 2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444, 6090

시 보

차례

◎ 조례

제 742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 3

◎ 고시

제 179 호 사료성분등록고시 18

◎ 공고

제 289 호 환지예정지 일부 변경지정 공고 18

◎ 사령 19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12월 20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42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에관한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 4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이하 "대"라 한다)의 조직·운영·대원의 정원·임면·훈련·검열·복무·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의설치) 대는 구단위로 두되 필요에 의하여 동일구내에 2개이상의 소방대를 두고자 할때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조 (대의명칭) 대에는 구의명칭을 위에 붙이고 동일구내에 2개이상의 대를 설치할때에는 구의 명칭 아래 제 1, 제 2등의 순위를 붙인다.

제 4조 (유급상비대원) 소방법 제 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급상비대원을 두고자 할때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대의조직) ① 대는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소방서장이 소방 또는 방공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로서 조직한다. 다만, 군인, 군속 공무원과 학생 및 직장방공단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

② 방공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여자대원을 둘 수 있다.

제 6조 (대원등) 대에 대장 1인, 부대장, 부장 및 반장 약간인을 둔다.

제 7조 (대장의 직무)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외업무를 통하고 대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대장이 지정하는 부대장이 그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장 및 반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부원 및 반원을 지휘한다.

제 8조 (업무분장) ① 대에 총무부, 방호부, 구호부, 훈련부를 둔다.

② 총무부에는 서무반 및 경리반을 두고 기획·인사·경리와 보급 기타 타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③ 방호부에는 소방반 및 감시반을 두고 화재의 진압과 방어, 방공업무에 있어서의 각종 시설의 정비, 감시, 경보전달, 통신, 연락 및 방공정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구호부에는 대피반 및 구조반을 두고 피난소개, 구호, 방독과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훈련부에는 교육반 및 훈련반을 두

고 교육훈련의 지도연구 제도와 선전에 관한 사항을 문장한다.

⑥ 소방서장은 필요할때에는 서울특별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부 또는 반을 통합 축소할 수 있다.

제 9 조 (정원) 대의정원은 그 소재지의 인구 3만까지는 60명, 3만을 초과하여 5만까지는 90명, 5만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만마다 5명을 가산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정원을 감할 수 있다.

제 10 조 (임명)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부대장과 부장 및 반장은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전함에 규정된 자 이외의 대원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원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 61조 및 제 62조

제 1 항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④ 회계 및 물품출납대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 11 조 (당연해직) 대원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해직된다.

1. 소재 불명이 된 때

2. 다른 대의 소재지로 이주한 때 다만, 유급상비 대원에 있어서는 다른 시, 도로 이주한 때

제 12 조 (복무감독) 대의 업무에 관하여는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소방법 제 48조의 규정에 의한 방공업무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 13 조 (대원의 복무) 대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 47조 내지 제 53조 및 제 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 조 (교양훈련)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과목에 관하여 매월 3시간 이상 교양훈련을 하여야 한다.

1. 훈육 및 소방관계법규

2. 점검 및 예방

3. 조련

4. 각종 소방펌프조작법

5. 소방훈련

6. 방공훈련

② 조련에 관하여는 경찰훈련교법, 점검에 관하여는 소방관점검규칙을 준용하고 전항제 4호이하의 기술과 훈련은 소방관훈련에 준한다.

제 15 조 (교양훈련담당자) 전조 제 1 항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훈련을 담당할 교관 및 조교는 소방관·경찰관 또는 대원중에서 소방서장이 선정한다.

제 16 조 (예법) 대원의 예법에 관하여는 경찰예절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 (복제) 대원의 복제는 별표와 같다.

제 18 조 (재원) 전조의 복제는 소방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에서 조제 지급한다.

제 19 조 (겸열) ① 소방서장은 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겸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겸열은 사무겸열과 훈련겸열로 나눈다.

제 20 조 (유급상비대원의 신분보장) ① 유급상비대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 46 조 내지 제 50 조 및 제 5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급상비대원의 연령 정년은 50세로 하여 정년에 달한 다음날에 퇴직한다.

제 21 조 (징계) ①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를 면직·감급 또는 결책을 행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무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대원의 임금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 71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징계권자) 징계는 임명권자가 행한다.

제 23 조 (표창) 대원에 대한 표창은 소방직공무원의 표창의 예에 의한다.

제 24 조 (응원절차) 소방상 긴급한 때 응원 요청에 의하여 출동한 소방서장은 재해현장에 도착한 즉시 출동인원과 장비를 현지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2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모든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9-6

제 331 호

시

보

1972.12.24

(별 표)

가. 소 방 모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방 모	<p>1. 카 바 동모는 흑감색모구레빠지, 하모는 취색포라지</p> <p>2. 전비와 턱끈의 흑색비너루지</p> <p>3. 자바라는 흑색전직지</p> <p>1. 모자의 천정은 타원형으로하고 둘레에는 철사를 넣어 팽팽하게 한다.</p> <p>2. 모자태의 주의 외면에는 넓이 4센티미터의 자바라를 두루고 내면에는 비너루 땀받이를 붙인다.</p> <p>3. 모자태의 전반부에는 금색금속 사로 짠 넓이 1.2센티미터의 따로 만든 턱끈식 금선을, 후반부에는 넓이 1.5센티미터의 턱끈을 두루고 양끝에 귀단추를 단다.</p> <p>4. 전비는 반월형으로 한다.</p>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별도 1. 소방모 (가) 정 모
작 업 모	취색나이론 직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나) 작업모
방 수 모	원형의 운동모 모양으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모 장	<p>1. 흑색 또는 다색포지합성화이바지</p> <p>2. 헬멜형으로 외면과 내면을 포지합성화이바지로 한다.</p> <p>3. 바탕은 흑색나사지, 자수부분은 금색 금속사</p> <p>4. 직경 4.5센티미터의 무궁화잎에 짜인 무궁화 6개 (좌우각 3개)로된</p>	<p>금색 금속지</p> <p>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만</p>	(다) 방수모 (라) 모 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모	정	제	원형 중앙에 높이 1.5 센티미터의 넓이 2 센티미터의 능형 속에 관창 4 개를 교차시킨 모양을 배하고 그 외부에 넓이 8 센티미터, 높이 2.2 센 티미터의 날개를 편 비둘기 모양을 자수한다.	주조한다.	
	장	식			
장	약	질	정장과 같이 한다.	정장과 같이 한다.	
	장	제	정장과 같이 한다. 다만, 크기는 정장의 3분의 2로 한다.		
	식				

나. 제 복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정	상	지	동복은 흑감색 모구레빠 또는 나 사지, 하복은 쥐색모포라 또는 나 사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	질			
복	의	지	1. 별립깃에 전면중앙에 한줄 4 개의 단추를 단다. 2. 동판은 중앙봉합선 하단을 절 개한다. 3. 흉부와 복부 각 좌우에 동복 은 속붙임, 하복은 겉붙임의 뚜껑의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4.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 단추를 단다. 5. 하복은 뒤히리 부분에 넓이 5 센티미터의 띠를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만 동복은 겪음깃으 로하고 한줄 5 개의 단추를 단 다.	별도 2. 제복 (가) 동정복 상의 ① 부장이상 ② 반장이하 (나) 하정복 상의 ① 전면 배면
	하	지			
	의	질	1. 상의와 같이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19-8

제 331 호

시 보

1972.12.21.

구 分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形
정	하	제	1. 진바지로 한다. 2. 전면우측에 옆으로 속붙임 작 은주머니와 좌우측면에 각각 길 이로 속붙임주머니를 1개씩 붙 인다. 3. 후면좌우에 각각 옆으로 속붙 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복	의	식			
작	상	지 질	취색목면 직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다) 작업복 ① 상 의
업	의	제	1.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붙 이고 전면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2. 진소매로 하고 흉부좌우에 결 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 니 단추를 단다.		
복	하	지 질	상의와 같이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② 하 의 그. 전 면 나. 후 면
방	수	지 질	정복의 하의와 같이 한다. 좌우 와 후면좌우에 결붙임 주머니를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복	복	제 식	국방색 고무포지 1. 길이는 뒷굽으로 부터 약 25 센티미터 격하도록 한다. 2. 소매길이는 손목관절로 부터 3 센티미터 길게 한다. 3. 플렌지 격음깃에 흉부 및 배 부에 방수고무지를 덧붙이고 전 면 좌우에 결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라) 방수복 ① 전 면 ② 후 면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방 수 복	4. 소매 끝에 내부에 약 10 센티미터 의 모직, 소매 줄임을 붙인다. 5. 전면에 고리 단추 5개를 한줄 로 단다.		

비 고

1. 정복상의의 전면 중앙단추의 배열간격은 최하단 단추가 허리띠 박클하부
에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 배열한다.
2. 단추는 다음표에 의한 단추를 사용한다.

구 분 특 별	소 방 단 추			뿔 단 추			비 고
	대	중	소	중	소		
정 복		○					
작 업 복					○		
주 머 니 단 추(정복)			○				상 의
견 장 단 추				○			
모 자 단 추			○				
하 의 단 추					○		

다. 소 방 화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화	지 질	흑색복수지(피혁)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 식	무창식단화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방 수 화	지 질	천연 및 합성고무, 범포자, 메리야 스지 및 철판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 식	1. 절이는 약 8.5 센티미터로 대퇴 부까지 올라오게 하고 2. 바닥속에 철판을 넣으며 3. 상부로부터 약 50 센티미터는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19-10

제 331 호

시 보

1972.12.21.

구 分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 방 화	방 수 화	제 식	<p>메리 야스지에 고무를 입힌 고무판을 안으로 붙인다.</p> <p>4. 상단 외측에 요대에 연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의 고리끈을 단다.</p>		

디. 표 지 장

구 分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표 식	정 제 장 식	금색금속지		은색금속지	별도 4
		1. 대장의 것 1변 1.7 센티미터의 능형 속에 "소"자 4개를 설치한것 3개 를 0.2 센티미터의 간격으로 한 줄로 배열한다.	1. 반장의 것. 대장의 것과 같은것 1개로 한다.	(가) 제급장 ① 대장의 것 ② 부대장의 것.	
		2. 부대장의 것. 위와 같은것 2개를 0.2 센티 미터 간격으로 배열한다.			
		3. 부장의 것 위와 같은것 1개로 한다.			③ 부장 및 반장의 것
	약 장 금 장	정장과 같이 한다.	정장과 같이 한다.		
	제 식	각급정장과 같이 하되 크기를 당해 정장의 3분지 2로 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 식	금색금속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제 식	세로 1.2 센티미터, 가로 2.5 센티미터 크기 구형으로서 우편에 구명, 좌편에 "의소"의 문자를 횡서로 양각한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나) 금 장	

마. 부 속 물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부 속 물	벽 타 이 지 질	동복용은 흑색, 하복용은 쥐색 모직지	해당없음.
	제식	일반 보통벽타이와 같이 한다.	해당없음.
	단 주 식	1. 직경 2.3 센티미터 (소형 1.5 센티미터), 높이 0.75 센티미터의 반구형으로 하고 가장자리를 넓이 0.2 센티미터 (소형 0.1 센티미터)의 로프형으로 하고 그안에 "소"자 한글표를 배한다. 2. 저면의 중앙에 직경 0.25 센티미터 (소형 0.2 센티미터)의 고리를 단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이 한다. 별도 5 (가) 단 추
	지 질	1. 박클은 금색 금속지 2. 떠는 동복은 흑색, 하복은 쥐색 목면지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나) 허리띠
	허리띠 제식	1. 박 클 세로 3.7 센티미터, 가로 5.3 센티미터 군용부라우스 박클로 한다. 2. 벨 트 넓이 3.2 센티미터, 두께 0.4 센티미터의 적당한 길이로하고 끝에 1.5 센티미터의 철판을 안, 밖으로 붙인다.	부장이상의 것과 같다.

참 고

- 복제의 착용기간은 소방관복제 제8조를 준용하며 유급상비대원은 상시, 기타 대원은 출동 및 소집시에 한하여 착용한다.
- 복장은 대여품으로 하되 대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오손으로 인하여 착용 불가능시에 한하여 현품과 교환 지급한다.
- 제복등의 착용구분은 소방관복제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제1호, 제3호를 준용한다.
- 포지장 및 부속물 착용은 소방관에 준한다.

19-12 제 331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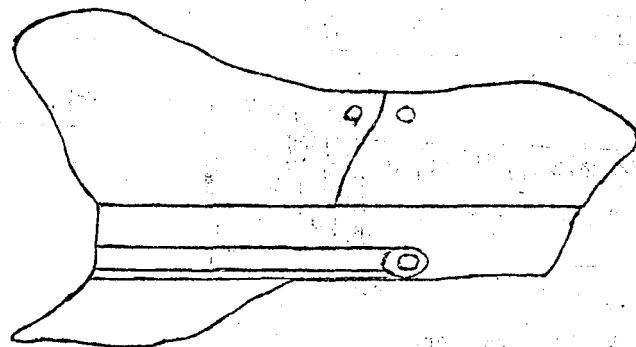
시 보

1972.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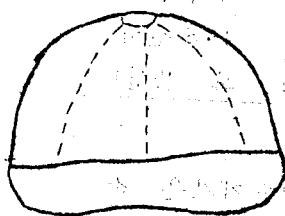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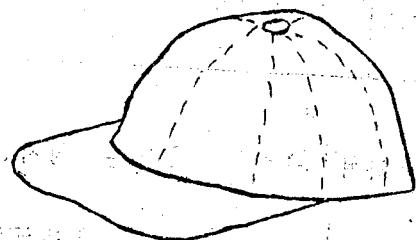
〃별도 1〃

소방모

가) 정모



나) 작업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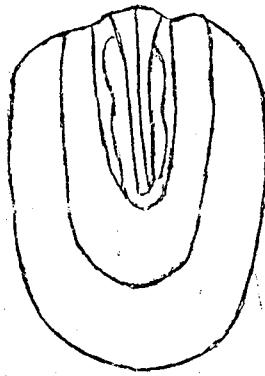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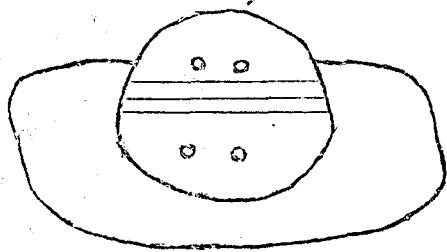
제 331 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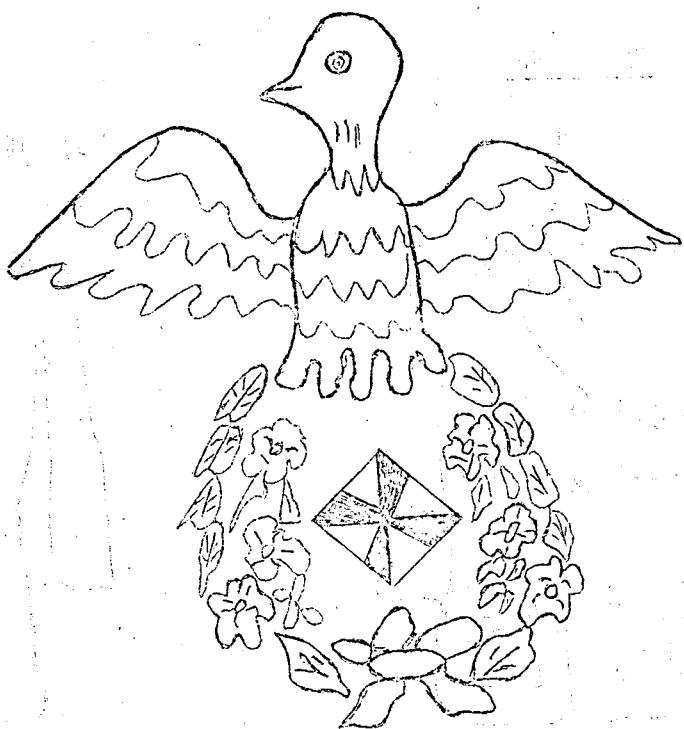
보

1972. 12. 21. 19-13

다) 방 수 모



라) 모 장



19-14

제 331 호

시

보

1972.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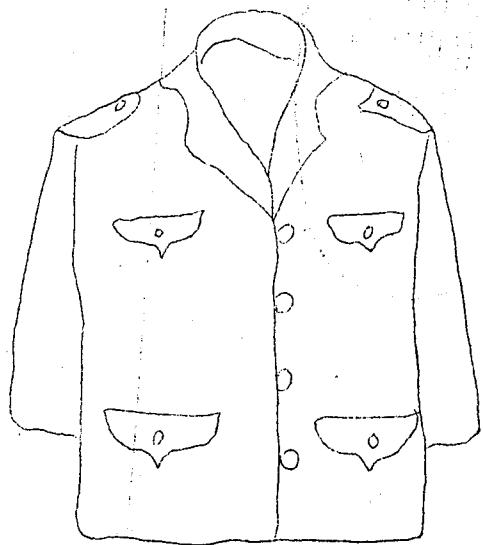
"별도 2"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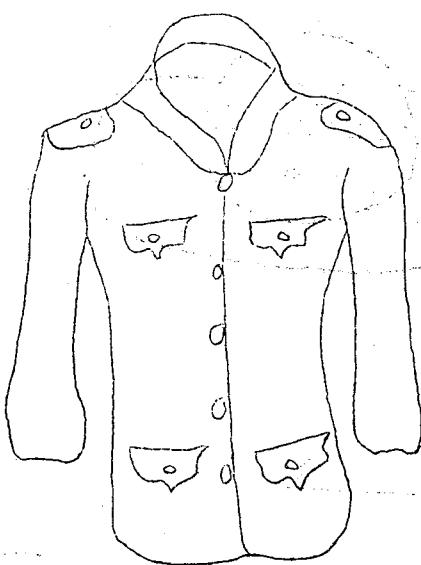
복

가) 동 정 복

1) 부 장 이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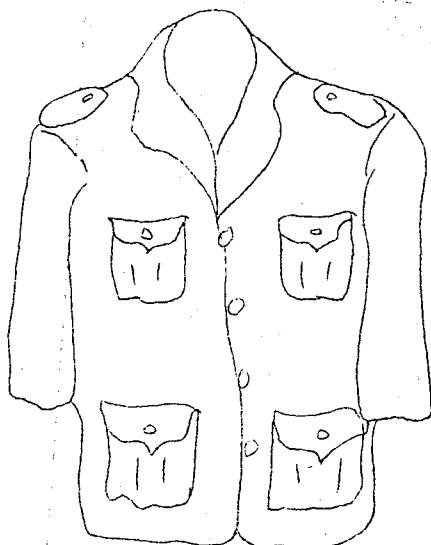


2) 반 장 이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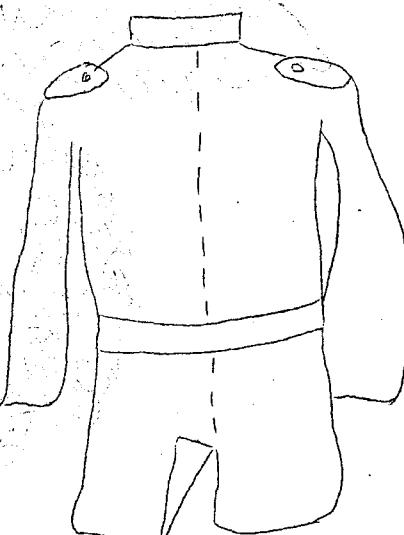


나) 하 정 복

1)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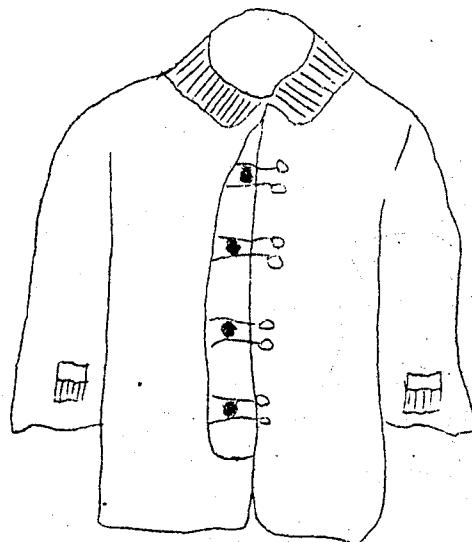


3) 배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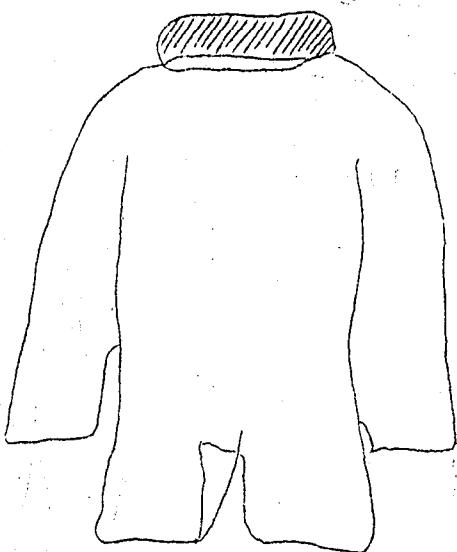


라) 방 수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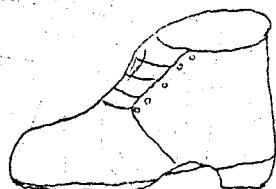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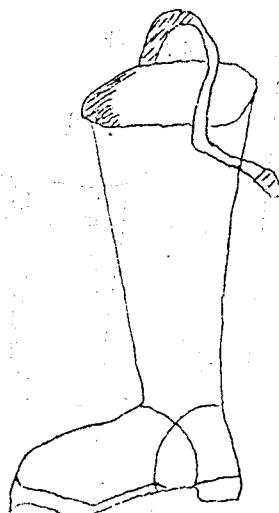
1) 전 면



2) 배 면



"별 도 3"

소 방 화가) 단 화나) 방 수 화

19-16

제 331 호

시

보

1972.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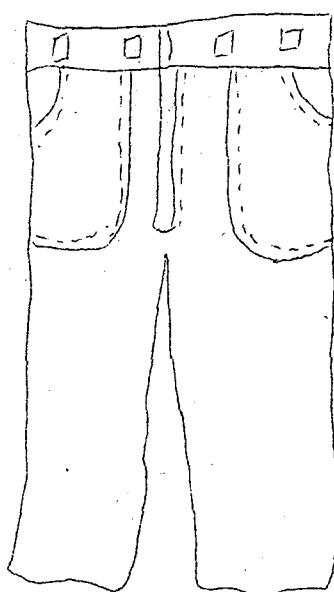
다) 작업복

1)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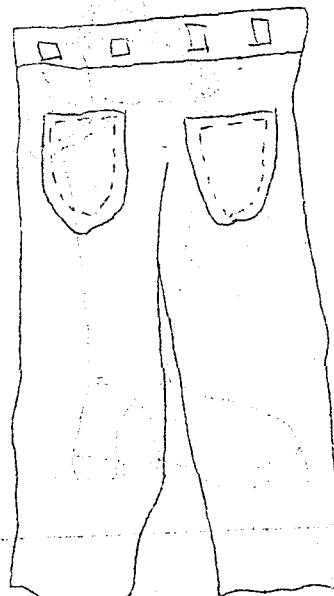


2) 하의

ㄱ. 전면



ㄴ.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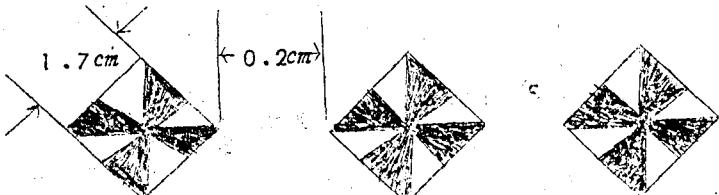


"별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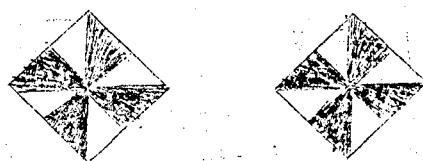
표식장

가. 계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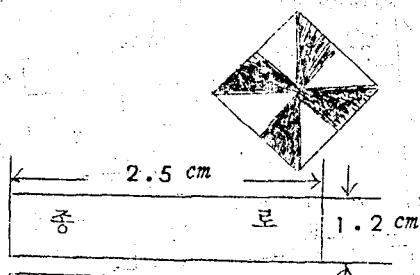
1) 대장의 것



2) 부대장의 것



3) 부장 및 반장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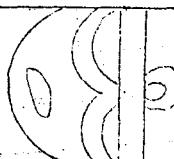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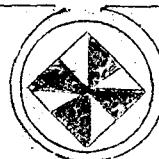


나. 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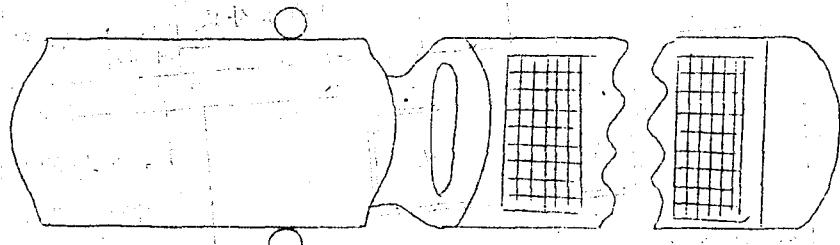
"별도 5"

부속물

가. 단추



나. 허리띠



19-18

제 331 호

시 보

1972.12.21.

고 시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9 호

사료성분 등록 고시

사료성분 등록을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2. 12. 20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 등록 사항

등록번호	공장소재지	공장명	대표자	사료		용도	사료의 성분량				유효기간
				종류	명칭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3-62	동대문구 제기동 998	유경 사료 공업사	유시련	배합사료	젖메기송 아지배합 사	생후 대략 3개월까지	50%상 19.0	2.5	8.0	9.0	72.12.20 74.12.19
3-63	"	"	"	"	젖 중 송아지 배합사료	생후 대략 3~ 6개월까지	16.0	2.5	10.0	9.0	
3-64	"	"	"	"	젖 큰 송아지 배합사료	생후 대략 6~ 18개월까지	12.0	2.0	12.0	11.0	
3-65	"	"	"	"	고깃소 전기 배합사료	고깃소 전기 비 육용	15.0	2.0	13.0	12.0	
3-66	"	"	"	"	고깃소 증기 배합사료	고깃소 증기 비 육용	13.0	2.0	11.5	11.0	
3-67	"	"	"	"	고깃소 후기 배합사료	고깃소 후기 완성용	11.0	2.0	10.0	10.0	
3-68	"	"	"	"	젖 메기 돼지 배합사료	생후 대략 2개월까지	18.0	2.0	6.0	9.0	
3-69	"	"	"	"	어린돼지 배합사료	생후 대략 2~ 4개월까지	15.0	2.0	7.0	9.0	
3-70	"	"	"	"	증 돼지 배합사료	생후 대략 4개 월이상의비육돈 및 8개월까지의 씨돼지	12.0	2.0	8.0	10.0	

공 고

⑤ 서울특별시 공고 제 289 호

· 환지예정지 일부변경 지정 공고

1. 도봉토지구획정리 지구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변경을 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 및 추가지정 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 및 추가지정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제 1파 및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이 공고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겠으나 송달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통지에 가름합니다.

1972. 12. 20

서울특별시장

사령

◎ 1972. 12. 21

청소제 2파 지방기계기사 주재형
서부위생처리장 파견근무를 명함.

자동차운수 지방기계기원보 흥영길
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흥영길
청소제 2파 파견근무를 해제
하고 서부위생처리장 파견근무
를 명함.

미아리보조 지방전기기사 서정식
수원·지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청소제 2파 지방전기기원 김기송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영등포구 지방기계기원 한영철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보광동 지방전기기원보 김영국
수원지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연료시험소 지방화공기원보 이달옥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농정과 지방수의사 권순호
복직을 명함.

농정과 근무를 명함.

농정과 지비수의원보 송재윤
복직을 명함.

농정과 근무를 명함.

청소제 2파 지방화공기사 이두재
서부위생처리장 장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장